

조 례 안 예 고

창원시의회 공고 제2024 - 10호

창원시 꿈의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「창원시 꿈의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창원시의회 회의 규칙」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1월 11일

창원시의회의장

1. 자치법규명

「창원시 꿈의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2. 제정이유

- 꿈의 예술단 단원 모집 시 사회취약계층의 60% 이상 우선 선발 및 활동 지원 노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, 취약계층 어린이에게 문화·예술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
- 창원시 관내 지역 형평성을 고려한 꿈의 예술단 구성과 자원봉사자의 재

능기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, 모든 시민이 꿈의 예술단 전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꿈의 예술단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(안 제3조)
- 나. 단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수정함(안 제4조)
- 다. 사회취약계층 우선 선발 노력을 구체화함(안 제5조)
- 라. 사회취약계층의 활동 지원 노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(안 제8조제2항)
- 마. 자원봉사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(안 제9조의2)

4. 의견제출

가.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시의회의장(참조: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팀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제출 사항

- 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- (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의견 제출할 곳: 우)51435 /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
창원시의회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팀(전화:055-225-5374, FAX:055-225-4743)

라. 의견제출 방법: 우편, 팩스, 이메일(keb2024@korea.kr), 직접 방문 등

창원시 꿈의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(정순욱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96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1. 10.

발 의 의 원 : 순욱 · 김묘정 · 백승규 · 이우완
이원주 · 전홍표 · 한은정 의원(7명)

찬 성 의 원 : 강창석 · 이정희 의원(2명)

1. 제안이유

- 꿈의 예술단 단원 모집 시 사회취약계층의 60% 이상 우선 선발 및 활동 지원 노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, 취약계층 어린이에게 문화·예술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
- 창원시 관내 지역 형평성을 고려한 꿈의 예술단 구성과 자원봉사자의 재능기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, 모든 시민이 꿈의 예술단 전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꿈의 예술단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(안 제3조)
- 나. 단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수정함(안 제4조)
- 다. 사회취약계층 우선 선발 노력을 구체화함(안 제5조)
- 라. 사회취약계층의 활동 지원 노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(안 제8조제2항)
- 마. 자원봉사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(안 제9조의2)

3. 참고사항

가. 신·구조문대비표

나. 관계 법령

다. 현행 조례

창원시 꿈의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창원시 꿈의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포함한 전속단원을 두며, 필요한 경우에는 비전속단원(예비단원 등)을 둘 수 있다”를 “포함하여 구성하며, 단원은 70명 이내로 구성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(중전의 제3항) 중 “관한”을 “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”으로 한다.

- ③ 재단은 구별 인구수,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원을 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.

제4조 후단을 삭제한다.

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.

- ① 단원은 공개모집으로 선발하며, 단원의 60% 이상을 사회취약계층으로 우선 선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.

제8조의 제목“(경비의 지원)”을“(지원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창원시장은 사회취약계층의 원활한 꿈의 예술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.

제9조 중 “시 3·15아트센터 등”을 “시”로 한다.

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2(자원봉사자) 재단은 원활한 꿈의 예술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신의 재능과 잠재력을 펼치고자 하는 재능기부자를 자원봉사자로 활용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구성 등에 관한 적용례) 제3조, 제4조,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모집·선발하는 단원부터 적용한다.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구성) ① 꿈의 예술단은 단장, 예술감독, 지도강사, 단원을 포함 한 전속단원을 두며, 필요한 경우에는 비전속단원(예비단원 등)을 들 수 있다.</p> <p>② (생 략) <신 설></p> <p>③ 꿈의 예술단의 구성과 정원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자체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.</p> <p>제4조(단원의 자격) 단원은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9세부터 15세까지를 대상으로 한다. 이 경우 사회취약계층은 18세까지로 한다.</p> <p>제5조(단원의 선발 등) ① 단원은 공개모집으로 선발한다. 이 경우 제4조 후단에 따른 사회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한다.</p> <p>② 단원은 단장이 위촉하고,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제1항 후단</p>	<p>제3조(구성) ① ----- ----- 포함 하여 구성하며, 단원은 70명 이내 로 구성한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재단은 구별 인구수,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원을 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.</p> <p>④ ----- -----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-----.</p> <p>제4조(단원의 자격) ----- ----- ----- ----- . <후단 삭제></p> <p>제5조(단원의 선발 등) ① 단원은 공개모집으로 선발하며, 단원의 60% 이상을 사회취약계층으로 우선 선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.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. <단서 삭제></p>

에 따른 사회취약계층에 해당하는
단원은 연임할 수 있다.

제8조(경비의 지원) (생략)

<신설>

제9조(시설의 이용) 꿈의 예술단의
공연 및 연습 시 3·15아트센터
등 관내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
다.

<신설>

제8조(지원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
분과 같음)

② 창원시장은 사회취약계층의 원
활한 꿈의 예술단 활동을 지원하
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.

제9조(시설의 이용) -----
----- 시 -----

--.

제9조의2(자원봉사자) 재단은 원활
한 꿈의 예술단 운영을 위하여 필
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신
의 재능과 잠재력을 펼치고자 하
는 재능기부자를 자원봉사자로 활
용할 수 있다.

■ 문화예술진흥법

- 제3조(시책과 권장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(施策)을 강구하고,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·보호·육성하며,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.
- ②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·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-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- ④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■ 창원시 꿈의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3조 및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라 문화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창원시 꿈의 예술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운영의 위탁) 창원시 꿈의 예술단(이하 “꿈의 예술단”이라 한다)의 운영은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에 위탁한다.

제3조(구성) ① 꿈의 예술단은 단장, 예술감독, 지도강사, 단원을 포함한 전속단원을 두며, 필요한 경우에는 비전속단원(예비단원 등)을 둘 수 있다.

② 꿈의 예술단의 단장(이하 “단장”이라 한다)은 재단 대표이사로 한다.

③ 꿈의 예술단의 구성과 정원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자체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.

제4조(단원의 자격) 단원은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9세부터 15세까지를 대상으로 한다. 이 경우 사회취약계층은 18세까지로 한다.

제5조(단원의 선발 등) ① 단원은 공개모집으로 선발한다. 이 경우 제4조 후단에 따른 사회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한다.

② 단원은 단장이 위촉하고, 위촉 기간은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제1항 후단에 따른 사회취약계층에 해당하는 단원은 연임할 수 있다.

제6조(단원의 해촉) 단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제4조에 따른 단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
2.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경우
3. 꿈의 예술단 설립목적에 어긋나거나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
4. 정당한 사유 없이 공연을 거부하거나 연속하여 월 3회 이상 연습에 불참한 경우

제7조(구성원의 임무) 구성원의 임무는 재단의 자체 운영 규정에 따른다.

제8조(경비의 지원) 창원시장은 꿈의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9조(시설의 이용) 꿈의 예술단의 공연 및 연습 시 3·15아트센터 등 관내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.

제10조(운영규정) 제4조에 따른 사회취약계층의 범위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한다.